

[학칙 개정(안)]

가. 제안이유

- 1) 사회봉사활동의 졸업 필수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
- 2) 대학학사제도과-2088호(2016. 07. 18) 호에 의거하여,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들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육아휴학제도를 개설하고자 함
- 3) 대학학사제도과-8328호(2016. 09. 26)호 「김영란법」 시행에 따른 「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」 과 관련하여,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내용을 근거로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사회봉사활동의 대상 학년도를 학칙에 명시하고자 함
- 2) 육아휴학에 대한 교육환경 및 제도 개선 요구에 따른 규정개정
- 3) 조기취업자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요건 개선에 따른 규정개정

다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(안)
제28조(휴학) ① ~ ② (생 략) ③ 휴학은 군 휴학, 일반휴학, <u>창업휴학</u> 으로 분류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8조(휴학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창업휴학, 육아휴학</u>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육아휴학 : 임신·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학업이 불가능한 경우 임신, 출산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u>
제39조(출석의무)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.	제39조(<u>출석</u>) ----- 강의에 4분의 3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조기취업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, 예외인정의 범위와 요건,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	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, 제46조 5항의 사회봉사 2학점의 졸업학점 미포함 대상자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